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분야 질의회시

우리 협회 교육부 문의사항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내용을 질의(Q)·회시(A) 형식으로 노동부와 우리 협회 박필수 고문, 홍종민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 연재합니다.

###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 1. 안전웬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Q** 당 현장은 기존 도로를 일부 차선을 통해 제한하고 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원, 안전웬스, 교통표지판 등이 필요한 실정인 바, 공사특성상 투입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A** 교통정리원, 안전웬스, 교통표지판 등은 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것임(노동부고시 제94-45호,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주) 1 참조)

(산안 68307-84, '95. 2. 18)

#### 2. 가설조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Q** 공사현장의 건물내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폐쇄되어 자연채광이 완전 차단됨으로써 조명시설이 없는 작업장의 안전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발주처에서는 가설조명 설치비를 설계내역서에 계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가설조명 설치비를 표준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A** 가설조명 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가설조명 설치시 근로자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등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건안 68307-301, '94. 11. 28)

#### 3. 소화기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Q** 공사현장의 화재예방활동을 위한 방화설비로서 소화기 및 방화사 등 소화용 장비의 구입에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소화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건안 68307-301, '94. 11. 28)

4. 무전기, 컴퓨터, 카메라, 안전순찰차량의 구입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Q**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무전기, 컴퓨터, 카메라, 안전순찰차량 등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안전용품의 구입비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고시 94-45호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기준 주) 1에서 안전보건 이외의 용도로 겸용되는 사항인 상기 항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 비록 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한다고 하여도 이같은 규정이 예외일 수는 없으며, 종전 고시에서도 이같은 사항이 인정된 것은 아님  
(건안 68307-301, '94. 11. 28)

5. 가설화장실, 경비초소, 식수비, 재해자 치료비, 보안등 설치비, 난방비 등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Q** 고시 제91-57호 “별표 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주요내용, 사용예시 및 기준에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여부

- 논의가 있는 항목
  - 이동식 화장실(가설화장실) 설치비용 및 분뇨수거료
  - 경비근무자 초소 설치비
  - 식수비(상하수도료 및 광천수 구입비)

- 산재자체치료비(요양기간 4일 미만 재해자 치료비)
- 구내보안등 설치비 및 전기료, 지하실 등 어두운 곳의 가설등 설치비 및 전기료
- 난방비

〈갑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항목을 말하는 것인 바, 위 항목들은 특별히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계상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와는 무관하게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시설의 설치 및 사용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안전관리비로 볼 수 없음

〈을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형태는 다양한 것이므로, 예컨대 위 항목 중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는 동 고시 “별표 2”의 별도계상비용에서 위생설비비용으로 볼 수 있는 등,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위 항목들은 전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봄이 타당함

**A**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47-222, '93. 12. 16)

**해설** 간이화장실, 급수시설, 지하수개발, 세면·샤워시설, 냉온방시설 및 부대비용, 안전보건 이외의 용도로 겸용되는 사항, 병원·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등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고시 제95-6호, 별표 2 주) 1. 참조)

## 건설업체의 재해를 조사

건설업체의 재해율조사 및 입찰참가제한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95-4호)제3조(재해율조사)

- 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 1.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하수급업체의 재해도 원도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Q** 폐사에서 하수급인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지불하고 하수급인 업체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득하였다면, 당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발표된 재해율 산정시 재해건수가 하수급인 업체로 접수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이 있는지 여부

만약 원수급인 업체도 공동책임에 의하여 재해를 산출시 재해건수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노동부에서 조사발표하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적용을 위한 건설업체별 재해율은 각 업체별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지난 1년간(1.1~12.31) 발생한 총재해자수를 조사하고 그 업체의 연간 총건설 매출액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자수를 산출, 백분율로 산정되며

- 이때에 하수급 업체에서 발생한 재해건수 뿐만 아니라 그 도급액도 원도급(원수급) 업체에 포함 산정되고 있는바,

그 이유는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있음

(건안 68307-195, '94. 7. 29)

- ※ 건설업체의 재해율조사 및 입찰참가제한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95-4호) 제4조 제3항 참조

### 2.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Q** 건설현장에서 공사수행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처리된 경우 재해율 분석시 포함을 시키는 여부

**A** 단순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질병 등 사망자에 있어서는 각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 회부 그 의견을 수렴하여 동 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확정함

(건안 68307-161, '94. 6. 23)

### 3. 자체발주공사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와 원도급계약하였을 경우 발주업체에 재해자수를 산입하는 법적 근거는?

**Q** 자체발주공사 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에게 사업주의 입장에서 원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발주자가 시공자 이면서 전문건설업체에 부분적으로 원도급을 줌), 원도급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계약된 금액에 따라 산재신고 후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전문건설업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그에 따른 재해통제도 전문건설업체에게 산입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람

**A**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 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는 바,
- 위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취지에 비취보건대 이때의 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한 의무이행대상 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발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진 질의의 경우, 발주자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행하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것임

※ 발주자가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일부 공사가 (원)도급인지,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이행과는 별개의 차원이고, 또한 산재보험법 제6조의 2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같은 보험관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예방의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님(별개의 차원임)

※ 아울러 발주공사를 자체시공할 경우 이때 시공자는 건설업법상 소정의 자격 및 지위(면허소지 등)에 근거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지 발주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시공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자체 발주공사(즉 발주자 겸 시공자)라 하여(다른 시공자에 비해)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임

(법무 68307-417, '94. 6. 20)

4. 제조업체 소속 출장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Q**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 중 “제조업의 출장작업” 범주에 속하는(예 : 승강기설치 하도급공사, 보일러설치 하도급공사 등) 제조업체 소속의 출장 근로자 업무상재해의 경우 재해를 계산에 있어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를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

**A** 일괄적용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제조업의 출장작업” 도중 발생한 제조업 출장근로자의 재해건수는 그 건설(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건안 68307-287, '94. 11. 8)

5. 제조업체 소속 출장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원수급업체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Q**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중 “제조업의 출장작업” 범주에 속하는(예 : 승강기설치 하도급공사, 보일러설치 하도급공사 등) 제조업체 소속의 출장 근로자 업무상 재해의 경우 재해를 계산에 있어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율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A** 일괄적용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제조업의 출장작업” 도중 발생한 제조업 출장근로자의 재해건수는 그 건설(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건안 68307-287, '94. 11. 8)